교육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 11. 10.(화) 08:00 보도시점 (인터넷)2026. 11. 10.(화) 국무회의 종료 시
(지 면)2026. 11. 10.(화) 국무회의 종료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별 구성 비율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규모 기준 관련 지역의 자율성 부여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기간 및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세분화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별 구성 비율의 자율화

기존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별 구성 비율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다.

* 지역의 각종 보육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소속 지자체의 장이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구성

** 보호자 및 공익대표자: 45% 이상, 보육전문가: 20% 이하, 관계 공무원: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 10% 이하

이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달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만 적용되던 제한을 없앤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위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보육 정책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규모의 합리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규모는 500세대 이상이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보육수급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에는 영유아 인구 및 보육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일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만 했다. 개정안에서는 지역별 보육 여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였다.

3 아동학대 관련 결격 기간 및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의 세분화

교육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2019헌마813)을 반영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26.5.19.)한 바 있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과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세분화하여 정하였다.

* (주요 내용)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과 취소된 자격의 재교부 금지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구분하였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0년으로 정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살해·치사죄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법률에서 정한 최대 기간(금고 이상의 실형 및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 20년 등)으로 규정하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다. 아울러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책임자	과장	김성근 (044-203-7202)
		담당자	서기관	김주희 (044-203-7203)
담당 부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책임자	과장	김성근 (044-203-7202)
		담당자	사무관	이혜빈 (044-203-7209)
담당 부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결격 기간)>	영유아지원관 영유아교원지원과	책임자	과장	연수진 (044-203-7151)
		담당자	사무관	고은옥 (044-203-716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거나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7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및 형의 종류 등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 및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재교부금지기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지역별 영유아인구의 편차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22. ~ 8. 31., 7. 30. ~ 9.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최소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3까지를 각각 제20조의10부터 제20조의14까지로 하고, 제2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9(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17년

3.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15년

② 법 제16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집행유예기간 및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0년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0년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7년
3. 5백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및 같은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6에서 같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해당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살해·치사죄 및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9까지를 각각 제25조의7부터 제25조의10까지로 하고,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재교부금지기간) ①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17년
3.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15년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 및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0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살해·치사죄 및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제25조의8(종전의 제25조의7)제4항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7"로 한다.

제25조의9(종전의 제25조의8)제2항제1호 중 "제25조의9제2항"을 "제25조의10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3) 및 제2호가목3) 중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1의5의 제목 중 "(제25조의6제2항 관련)"을 "(제25조의7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 특별시·통합특별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후단 삭제>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삭 제>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삭 제>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삭 제>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삭 제>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삭 제>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 다만,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최소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9(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17년
3.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15년
② 법 제16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집행유예기간 및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0년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0년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7년
3. 5백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및 같은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6에서 같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해당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살해·치사죄 및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제20조의9 ~ 제20조의13 (생 략)	제20조의10 ~ 제20조의14 (현행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3까지와 같음)
<신 설>	제25조의6(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재교부금지기간) ①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17년 3.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15년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 및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0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살해·치사죄 및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제25조의6 (생 략)	제25조의7 (현행 제25조의6과 같음)
제25조의7(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제25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8(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5조의7 ---------- ---------- ---------- ----------.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① (생 략)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5조의9(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의9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2.·3. (생 략)	----------. 1. 제25조의10제2항---------- ---------- ---------- ---- 2.·3. (현행과 같음)
제25조의9 (생 략)	제25조의10 (현행 제25조의9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3 - 7168 (044) 203 - 7209